

인천외고 해직교사 공립 특별채용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

2013. 12. 20(금)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13. 11. 28.

나. 제안자 : 구재용 의원(대표발의)

다. 회부일자 : 2013. 11. 28.

라. 상정일자 : 2013. 12. 2.(제212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

- 제안설명 : 구재용 의원(대표발의)
- 검토보고 : 교육수석전문위원 강창학
- 질의 및 토론
- 원안부결

2. 제안설명 요지

- 인천외고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외쳤던 두 교사가 해직되어 9년째 교단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기에 두 해직 교사의 복직은 보수와 진보를 떠나 인천교육계의 화합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 현재 인천지역 국회의원 다수가 인천외고 해직교사 복직에 동의하였으며, 인천광역시의회도 지난 2012년 2월 10일 제198회에서 「인천외고 사태 완전 해결과 해직교사 복직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고

- 2013년 6월 문용린 서울시교육감도 사립학교 민주화 관련 해직교사를 복직시키고 교육부도 이를 허락하는 등 사립 민주화 관련 교사 특별채용이 이루어지기도 하였으며,
또한, 문용린 서울교육감이 교육부 장관이던 2000년에도 100명이 넘는 교사들이 공개경쟁 없이 채용된 바 있었고 서남수 장관이 부교육감이던 경기도와 서울에서도 똑같은 절차를 거쳐서 10여명이 특별 채용된 전례가 있었음.
- 이처럼 전국에서 광범위하게 특별채용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징계처분자나 사학분쟁으로 해임된 교사들도 특별채용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학분쟁으로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특별채용할 수 없다는 인천광역시교육청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결의안은

2004년 인천외고에서 해직된 박춘배, 이주용 교사의 공립 특별채용을 촉구하는 사항으로, 구재용 의원 등 11명이 발의하여 2013년11월28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됨.

○ 검토의견은

인천외고 해직교사에 대한 고등법원의 판결내용과 2013년 서울시교육청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사례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특별채용관련 법규 적용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인천외고 교사는 해직된 지 거의 10년이 다 되어가는데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채용해 달라는 사유는?
⇒ 충분한 반성을 하였으며, 학내 민주화를 위해 노력한 사람임
- 서울시교육청은 해직교사를 특채하였고, 외고 교사들의 문제는 의회에서도 촉구했었음, 불법인가?
⇒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해당 교사가 사면되어 채용된 경우이며, 인천은 학교의 징계 절차가 위법이 없고, 법원의 판결을 이행하지 않은 사항으로 서울과 다름.

5. 토 론 요 지

- 본 결의안의 2004년 인천외고의 두 해직교사는 학내 분쟁에 따른 재단과 교사간의 문제로 해직교사들이 법원의 결정 화해 권고안인 다른 학교로의 전적을 이행하지 않아 교원의 신분을 상실하게 된 사안이며, 사학비리 제보를 이유로 해임된 교사를 서울교육청에서 특별채용한 사례와도 다르므로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

가. 찬성 : 김영태, 노현경, 구재용 위원

나. 반대 : 허회숙, 권용오, 배상만, 이수영 위원

6. 소수의견 요지

- 인천외고 해직교사 공립특채에 대해서 집행부에 적극적인 자세를 촉구했듯이 인천외고 해직교사 공립 특별채용 촉구결의안 이 원안에 대해서 찬성함.

7. 심 사 결 과

-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

8. 기타 사항

- 특이사항 없음

- 붙임 : 1. 인천외고 해직교사 공립특별채용 촉구 결의원 1부.
2. 관련부서 검토의견서 1부
3. 관련 근거법령 발췌사항 1부.

【붙임1】

인천외고 해직교사 공립 특별채용 촉구 결의안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인천외고 해직교사 공립 특별채용 촉구 결의안

(구재용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056
----------	------

발의연월일 : 2013. 11. 28.

발 의 자 : 구재용 의원

(찬성자 10)

1. 주 문

2004년 인천외고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외쳤던 두 해직교사에 대하여 인천교육계의 화합과 타시도와의 형평성에 비추어 인천광역시교육청이 상생의 시대정신을 발휘하여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 가. 인천교육계의 화합과 인천외고 사태의 진정한 해결을 위해 박춘배, 이주용 교사 복직을 촉구한다.
- 나. 인천광역시교육청이 해직교사 복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2. 제안이유

- 가. 인천외고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외쳤던 두 교사가 해직되어 9년째 교단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기에 두 해직 교사의 복직은 보수와 진보를 떠나 인천교육계의 화합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 나. 현재 인천지역 국회의원 다수가 인천외고 해직교사 복직에 동의하였으며, 인천광역시의회도 지난 2012년 2월 10일 제198회에서 「인천외고 사태 완전 해결과 해직교사 복직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고

- 다. 2013년 6월 문용린 서울시교육감도 사립학교 민주화 관련 해직교사를 복직시키고 교육부도 이를 허락하는 등 사립 민주화 관련 교사 특별 채용이 이루어지기도 하였으며,
또한, 문용린 서울교육감이 교육부 장관이던 2000년에도 100명이 넘는 교사들이 공개경쟁 없이 채용된 바 있었고 서남수 장관이 부교육감이던 경기도와 서울에서도 똑같은 절차를 거쳐서 10여명이 특별 채용된 전례가 있었음.
- 라. 이처럼 전국에서 광범위하게 특별채용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징계처분이나 사학분쟁으로 해임된 교사들도 특별채용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학분쟁으로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특별채용할 수 없다는 인천광역시교육청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3. 결의안 이송처

- 가. 인천광역시교육청

4. 칙 부

- 가. 인천외고 해직교사 공립 특별채용 촉구 결의안

인천외고 해직교사 공립 특별채용 촉구 결의안

2004년 인천외고 사태는 인천교육의 발전과 사립학교의 정상화 과정에서 빚어진 전국적인 사건이었다. 특히 진정한 학교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는 학교구성원들의 화합과 동의에 기초하여 민주적인 학사운영이 이루어져야 함을 알린 사건이었다.

이러한 교훈을 얻는 과정에서 큰 희생과 갈등이 있었으며, 당시 학내 민주주의와 인권을 외쳤던 두 해직 교사가 9년째 교단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인천 시민 모두의 아픔으로 남아 있으며 인천외고 해직 교사의 복직은 보수와 진보를 떠나 인천교육계의 화합을 위해서 인천시민 모두가 요구하는 사항이다.

특히 올해 6월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은 사립학교 민주화 관련 해직 교사를 복직시키고 교육부도 이를 허락하여 특별채용이 이루어지는 등 전국에서 광범위하게 특별채용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징계처분자나 사학분쟁으로 해임된 교사들도 특별채용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두 해직교사의 복직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기에 이제 인천교육을 책임지는 인천광역시교육청이 화해와 상생의 시대정신을 발휘할 수 있도록 촉구한다.

이에 인천광역시의회의회는 다음에 제시한 사항에 대해 인천광역시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 인천교육계의 화합과 인천외고 사태의 진정한 해결을 위해 박춘배, 이주용 교사를 복직을 촉구한다.

하나. 인천광역시교육청이 해직교사 복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2013년 월 일

인천광역시의의회 의원 일동

[붙임 2]

의안에 대한 의견서(교원정책과)						
제명	인천외고 해직교사 공립 특별채용 촉구 결의안					
발의의원	구재용					
주요검토항목	검토내용	유	무	검토내용	유	무
	1. 입법의 필요성 2. 재정지출 등 예산사항 포함 여부 3. 부패영향평가 및 규제사무 등 사전 심의 필요여부 4. 관련부처 승인필요		○	5. 상위법 위반여부 6. 다른 조례와 상충여부 7. 민원·갈등가능성 8. 조직·인력 변경여부 9. 기타 필요사항	○	○

1. 검토 의견

- 본 사안은 신성학원 학내 분쟁에 따른 재단과 교사간의 문제로 해직교사들이 법원의 결정인 화해 권고안인 다른 학교로의 전적을 이행하지 않아 교원의 신분을 상실하게 된 사안
- 인천외고로부터 2004.04.25 파면 처분을 받았고, 2007년 서울고등법원에서 정직 3월의 징계처분과 전적이행의 화해권고안을 판결하였으나, 박춘배는 화해권고안을 이행하지 않아 2008.12.에 파면처분 되었고, 이주용은 전적을 이행하지 못하여 2012.7. 근로관계가 종료됨
- 대법원 판결(1996 판결, 1998 판결, 2003 판결, 2005년 판결 등)에 따르면, 「교육공무원법」 제12조에 따라 특별채용할 것인지 여부는 임용권자의 판단에 따른 재량에 속하는 것이고, 임용권자가 임용지원자의 임용 신청에 기속을 받아 그를 특별채용하여야 할 의무는 없으며, 임용지원자로서도 자신의 임용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없음

○ 서울시교육청의 특별채용은

사학비리 제보를 이유로 해임된 교사 ○○○는 사학비리제보가 「공익신고자보호법」상 공익제보와 상당한 인과관계(15억 유용 재단비리)가 존재하여 사면되었고, 시국사건(국가보안법)으로 해임된 교사 ○○○도 사면되어 특별채용 되었으나

○ 인천외고 해직교사의 경우는

학교의 징계 절차가 위법이 없었고, 법원에서 정직 3월과 동시에 전적이행의 화해권고안을 이행할 것을 판결하였으나, 본인들이 법원의 판결을 이행하지 않아 파면처분 및 근로관계가 종료됨

○ 따라서 본인들에게 상당한 귀책사유가 있어 특별 채용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되고, 법원의 판결에 의해 징계 처분된 자를 공개전형 없는 특별채용은 특정인에 대한 특혜 소지의 논란이 있을 수 있음

○ 최근의 신규채용 인원 감소 등을 고려할 때 특정인의 특별채용은 신규임용을 준비하는 예비교사의 측면에서 보면 부당한 처사로 보여질 수 있음

2. 참고사항

○ 화해권고 결정 내용(서울고등법원 2007.07.03 판결)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4.04.25 정직 3월의 징계처분(법원결정)을 하였음을 확인하고, 향후 원고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피고가 파면처분을 함에 대하여 원고는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법원 화해권고 결정에 따라 징계처분이 파면에서 정직 3월로 정정됨)
- 원고는 2012.07.31까지 매 학기말 및 학기 초마다 피고 소속 이외의 다른 학교에로의 전적을 신청하여야 하고, 위 전적을 신청한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내용 증명 우편으로 피고에게 위 전적 신청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이를 어기는 경우 위 1주일 경과 다음 날에 피고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된다.
- 피고는 원고가 전적을 희망하는 학교로 전적할 수 있도록 협력하되, 원고에게 위 전적시까지 어떠한 경우라도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원고도 이를 청구하지 아니한다.
- 원고는 2012.07.31 또는 다른 학교에의 전적시 중 빨리 도래하는 때 까지만 피고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한다.
- 원고가 2012.07.31까지 다른 학교로 전적하지 못하는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금원을 지급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한다.

○ 교사임용거부처분취소(대법원 2005.04.15선고, 2004두11626판결)

【판시사항】

[1]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 되기 위한 요건

[2] 교사에 대한 임용권자가

교육공무원법 제12조에 따라 임용지원자를 특별채용하는 경우, 임용지원자가 임용권자에게 자신의 임용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려면, 행정청의 행위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그 국민에게 있어야 하고, 이러한 신청권의 근거 없이 한 국민의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거부로 인하여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2] 교사에 대한 임용권자가

교육공무원법 제12조에 따라 임용지원자를 특별채용하는 경우, 임용지원자가 임용권자에게 자신의 임용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없다고 한 사례.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9. 22. 선고 2003누1830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려면, 행정청의 행위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그 국민에게 있어야 하고, 이러한 신청권의 근거 없이 한 국민의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거부로 인하여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런데 교사에 대한 임용권자가 교육공무원법 제12조에 따라 임용지원자를 특별채용할 것인지 여부는 임용권자의 판단에 따른 재량에 속하는 것이고, 임용권자가 임용지원자의 임용 신청에 기속을 받아 그를 특별채용하여야 할 의무는 없으며 임용지원자로서도 자신의 임용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에 있어, 원고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이 피고가 관할하는 경기도의 각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 임시강사로 채용되어 3년 이상 근무하여 온 자들로서 정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 교육공무원법 제12조 및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2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 대상자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있고, 원고 등과 유사한 지위에 있는 전임강사에 대하여는 피고가 정규교사로 특별채용한 전례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임용지원자에 불과한 원고 등에게 피고에 대하여 교사로의 특별채용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 등의 특별채용 신청을 거부하였다고 하여도 그 거부로 인하여 원고 등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어서 그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나 특별채용 신청권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붙임 3】

관련 근거법령 발췌사항

□ 교육공무원법

제12조(특별채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채용을 할 수 있다.

1. 제44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이 만료되어 퇴직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2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퇴직한 교육공무원을 퇴직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퇴직시에 재직할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의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또는 교육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사람을 퇴직시에 재직할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의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2. 임용 예정직에 상응하는 연구 실적 또는 근무 실적이 3년 이상인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3. 경쟁시험으로 결원을 보충하기 곤란한 도서·벽지 등 특수한 지역에 근무할 사람과 특수한 교과목을 담당할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4. 교육경력, 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이 있는 공무원으로서 경쟁시험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

5.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을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② 「국가공무원법」 제70조제1항제3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2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면직된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다

□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9조의2(특별채용의 요건)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특별채용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법 제1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할 경우에는 전재직기관에 전력을 조회하여 그 퇴직사유가 확인된 자(교육공무원이던 자가 일반직 공무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하였던 자인 경우에는 그 퇴직후 1월 이내에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자)이어야 한다)

2. 법 제1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할 경우에는 「유아교육법」 제22조, 「초·중등교육법」 제21조, 「고등교육법」 제16조 또는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초·중등교육법」 제61조에 따라 같은 법 제21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학교의 교장을 임용권자가 정하는 공모절차에 따라 임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임용예정직에 관련성이 있는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의 연구 또는 근무실적(자격기준 해당전의 경력도 포함한다)이 있는 자

3. 법 제1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할 경우에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서·벽지에 근무할 교사와, 공업계 과목이 표시된 자격증을 소지하고 중등학교에서 실업계 교과목을 담당할 교사 기타 교육부장관이 교원수급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과목을 담당할 교사

3의2. 법 제12조제1항제4호 및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과 「유아교육법」 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국립·공립 학교의 교원 간 상호 전직을 위하여 임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람

가. 국립·공립 학교의 교원을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임용될 날을 기준으로 교육경력·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

이 1년 이상인 교원으로서 법 제9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

나.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을 국립·공립 학교의 교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임용될 날을 기준으로 교육경력·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이 1년 이상인 교육전문직원으로서 「유아교육법」 제22조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

4.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제3호의2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공무원을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임용될 날을 기준으로 7급 이상의 직위에 상당하는 국가 또는 지방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5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하고 있을 것

나. 임용될 날을 기준으로 교육경력·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이 9년 이상일 것

다. 「유아교육법」 제22조, 「초·중등교육법」 제21조, 「고등교육법」 제16조 또는 법 제9조에 따른 자격이 있을 것

5. 법 제1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립학교교원을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할 경우에는 사립학교의 근무경력이 3년이상인 자와 사립학교의 폐교·폐과 또는 학급감축으로 퇴직 또는 과원이 되는 교원